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 
제224회 제1차 정례회(2018. 9. 19.)

「2018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」  
**검 토 보 고 서**



**예산결산특별위원회**  
**전문위원 조희옥**

#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안건명

-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

### 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- 제출일 : 2018. 08. 23. (목).
- 제출자 : 마포구청장

### 3.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

- 2018. 09. 19. (수).

### 4.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일자

- 2018. 09. 19. (수).

### 5. 관련근거

-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## 6. 제안이유

- 추경예산 편성에 의한 2018년도 기금 세입·지출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제출함.

## 7. 주요내용

### ○ 조성목적

- 남북평화협력 분위기가 본격화 될 경우 구 단위 교류협력 사업의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전출금 1억을 추가로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조성하여,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재개 시 신속히 기금을 투입하고 남북협력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.

구분(편성목)	변경전(기정액)	변경후(경정액)	증 감
예치금	50,000천원	150,000천원	100,000천원

### ○ 2018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(안)

#### - 수입계획

(단위 : 천원)

예산과목			기정액	경정액	증 감	비고
합 계			256,663	356,663	100,000	
세외수입			4,100	4,100	0	
경상적 세외수입	이자수입	216-01 공공예금이자수입	4,100	4,100	0	공금계좌, 정기예금 발생 이자
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			252,563	352,563	100,000	
보전수입 등	예치금 회수	714-01 예치금회수	202,563	202,563	0	2017년도말 기금잔액 예치금
내부거래	전입금	721-03 기타회계전입금	50,000	150,000	100,000	전입금 1억 증액

- 지출계획

(단위 : 천원)

예산과목			기정액	경정액	증감	비고
합계			256,663	356,663	100,000	
구정현안 협업기반 조성			50,000	50,000	0	
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	일반운영비	201-01 사무관리비	1,260	1,260	0	심의위원회 위원 수당
	일반운영비	201-03 행사운영비	48,740	48,740	0	남북교류협력 사업비
재무활동			206,663	306,663	100,000	
보전지출	여유자금 예치	602-01 예치금	206,663	306,663	100,000	예치금 1억 증액

## 8. 검토의견
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의거 기금운용 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,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남북교류협력기금 1억원 증액을 위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된 건으로,
-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 판문점 선언이후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접하고 있는 시점에서 어제부터 남북 정상회담 개최와 동시에 정치, 경제, 사회계 인사들의 활발한 교류로 남북 평화 분위기가 고조됨에 따라
- 구 단위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한 기금 조성은 남북교류협력의 발판이 되어 평화정착과 남북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,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다만,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설치목적에 따라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추후 성과분석을 통하여 기금운용의 효율화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

## 참 고 사 항

### ▣ 기금개요

- 설치근거 :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3조
- 설치년도 : 2014년
- 재원조성 : 일반회계 전입금, 이자수입 등
- 기금용도
  - 기금의 조성,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
  -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인도적 지원 사업 및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한 사업의 경비
  - 그 밖의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지원

## 관 계 법 령

### ▣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

**제3조(기금의 설치 및 조성)** 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7.12.28>

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구의 출연금
2.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3. 그 밖의 수입금

### ▣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**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 <개정 2015. 7. 24.>
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5. 7. 24.>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